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의 회 사 무 국
위 원 회 제 안

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4. 9. 5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4. 9. 5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시 의회의 폐회 중인 경우를 고려하여 존속기한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질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임위원회별 추천 위원 인원 변경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존속기한 명확화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제4항제2호 ~ 제4조제6항)
- 위원의 질의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경과보고서 및 위원장의 보고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- 법 인용 조항 문구 수정 (안 제16조제1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

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제2호 중 “3인이내”를 “2인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폐회·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된 때까지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위원의 질의 등)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(冒頭)발언을 청취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.”

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

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
해야 한다.

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
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
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
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위원장의 보고)”를 “(경과보고서 및 위원장의 보고)”로
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
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
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
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”을 “군사·외교·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
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
있음이 명백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각 상임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 이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1. (생략) 2.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<u>3인이내</u> (단,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.) ⑤ (생략)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 <단서 신설>	제4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2인이내</u> ----- -----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다만, 폐회·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된 때까지로 한

⑦ · ⑧ (생 략)

<신 설>

다.

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의 질의 등) ① 위원회

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(冒頭)발언을 청취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.”

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.

제8조 · 제9조 (생략)

제10조(경과보고서) ① 위원회가

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제9조 · 제10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

<삭제>

제11조(위원장의 보고) <신 설> ① · ② (생 략) 제16조(답변등의 거부)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「국회에서의 증언 · 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11조(경과보고서 및 위원장의 보고)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② · 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 제16조(답변등의 거부) ① ----- ----- 군사 · 외교 ·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의2(인사청문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
2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이사장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